

2019년 지방직 7급 - 지방자치론

해설 : 이승철

※ 이 해설은 2020.2.18. 기준으로 작성됨(부가가치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

0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해설

①②③은 단체자치의 특징이다.

- ① (×) 주민자치는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 이전의 자연법적 권리로서 고유권으로 본다.
- ②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고유사무)만 있으므로 국가사무(위임사무)와 지방사무(고유사무)의 구분이 필요 없다.
반면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필요하다.
- ③ (×)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이중적 성격 - 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반면 주민자치에서 국가사무는 국가의 하부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의해 수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만 수행하므로 단일적 성격만 갖는다.
- ④ (○)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에 중점(아래로부터의 참여)을 두고, 주민의 권리(참여)를 중시한다(민주주의 사상).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의 독립에 중점(위로부터의 독립)을 두고, 자치단체의 권능(자치권) 중시한다(지방분권주의)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영국식 모델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일정 사무를 처리한다는 대륙형 모델
자치의 의미 자치의 중점	정치적 의미(민주주의 사상)의 자치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기능적 협력관계에서 주민참여에 중점(아래로부터의 참여) ⇒ 주민의 권리(참여) 중시	법률적 의미(지방분권주의)의 자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권력적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독립에 중점(위로부터의 독립) ⇒ 자치단체의 권능(자치권) 중시
자치권의 본질	고유권설(확인설) 자연적·천부적 권리로서 국가 이전의 권리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련 있음	전래권설(수탁설·국권설) 국가에 의해 수여된 실정법상의 권리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치권의 범위	광범위	협소
중앙통제방법	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소극적 통제)	행정적 통제 위주(적극적 통제)
수권방법	개별적 수권주의(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주의(개괄적 위임주의)
중앙과 지방관계	비권력적 감독(기능적 상호협력)	권력적 감독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없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있음)
자치단체의 성격	단일적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성격만 지님)	이중적 성격(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의회제, 위원회제)	기관대립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
기관 간 우월적 지위	의결기관 우월주의	집행기관(長) 우월주의
지방세제	독립세주의(조세종목 단순), 분리과세	부가세주의(지방세 수입의 종류 복잡), 중복과세
대표국가	영국·미국형 모델	독일·프랑스 중심의 대륙형 모델

답 ⑤

02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②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 ③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 ① (×) 헌법 제118조는 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헌법 상 지방자치 규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 지위

- ㉠ 주민의 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 선출된 선거구 주민이 아닌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 주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의 대표기관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 ㉡ 의결기관(의사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지님.
- ㉢ 입법기관 :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
- ㉣ 행정감시기관 :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실현되는지 감시·확인.
- ㉤ 헌법기관 :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답 ①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 ③ 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한다.
- ④ 199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고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되었다.

해설

- ②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등의 명칭·구역 변경, 폐지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절차

구 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시	리
명칭·구역 변경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함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도의 조례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구역은 자연촌락 기준)
폐지분합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침)	* 단,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사무소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지방의회의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			

답 ②

04 대도시의 자치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시는 조직 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훈과 관련 하여서는 특례를 인정받지 않고 있다.
- ③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3명으로 한다.
- ④ 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해설

- ① (○)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 가능
• 지방자치법 제3조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② (×) 인사·서훈에 관한 특례도 인정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 ①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③ (×) 지방자치법 상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는 1명이다. 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1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 ④ (×)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를 두며 군은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 상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군, 자치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에 안에 둔다.
- 지방자치법 제3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답 ①

0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①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②③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④ (○)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대학은 교육훈련기관에 포함된다.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각 호 생략).

답 ④

06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 ② 외부효과의 배제, 복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 ③ '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한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 ④ 분권적 배분체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새뮤얼슨(Samuelson)의 이론을 반박한다.

해설

- ③ (×)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이 티부가설의 영향을 받았다.

↳ 티부가설 : C. Tiebout. 1956년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에서 제시

↳ 복지자석효과 : P. Peterson. 1981년 「City Limits」에서 제시

티부가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정책의 차이가 주민 이동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복지자석효과는 재분배정책 수준의 차이에 따른 주민 이동을 설명한다. 또한 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Tiebout 모형)에서 지방정부가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유치와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점에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Tiebout의 연구에 부분적으로 입각해 있다.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복지수요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능력인구의 유출을 촉진(복지자석효과)시키지만 개발정책은 생산능력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므로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보았다.

■ **복지의 자석효과** :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에 의해 복지수급자의 이동이 발생하는 현상

- ① 소득계층 사이에 자원이 이전되는 재분배정책에서는 수익자(복지서비스의 소비자)와 부담자(그 때문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불일치가 생기고, 주민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 ② 재분배정책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이미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기대하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저소득층의 유입을 불러온다. 반대로 편익보다 부담이 커지게 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주민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다.
- ③ 부유한 이주자들의 이주지가 되는 도시는 다른 지역만큼 재분배정책에 열정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 도시의 지방정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유입은 그 자체 잉여자원(세금부담 능력이 높은 신주민)을 낳고, 그 도시의 이익에 일치하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에 열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 ④ 피터슨은 복지정책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치가나 행정관의 선호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복지정책) 시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답 ③

※ 티부(C.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 가설(voting with feet ; 이주에 의한 투표권 행사 ; 티부가설)

의의	①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 간의 묶음을 주민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로 진입·퇴장을 보장하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지방분권 옹호). 지방공공재의 시장배분적 과정 중시. ② 공공재는 분권적인 배분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새뮤얼슨(P. 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을 반박한 것.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방법이 지방분권임을 주장한 것이지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 이론은 아님.
전제 조건	① 상이한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자치단체가 존재. 공공서비스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선택함. ②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이주비용이 거의 없음) :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거래비용(이사비용 등) 등 제약 없이 지역 간 이동이 가능. 불완전한 이동이 아닌 '완전한 이동성'을 전제(집을 팔고 이주). ③ 모든 주민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 취업기회 차이나 소득획득상의 지역적 한계성이 없음. → 거주지 선정시 고용기회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단지 지방정부 재정프로그램만을 기준으로 거주지 선택. ④ 완전 정보 : 시민들은 모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프로그램(지방정부의 공공재, 지방세, 세입·세출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짐. ⑤ 외부효과 없음 :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의 이익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며 이웃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경제) 또는 불이익(불경제)을 주지 않아야 한다(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지역 간 이동이 불필요해 질 수도 있기 때문). ⑥ 지방공공재 생산시 소요되는 단위당 평균비용은 일정(규모수익이 불변인 생산기술로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함) : 지방정부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지방공공재 대량생산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거주자가 많을수록 공공서비스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지방정부가 대규모화 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 수가 제약됨). * 재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세(property tax)로 충당되며 국고보조금 등은 없다고 가정. ⑦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가지의 고정적 생산요소(fixed factor)를 가짐 →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 ⑧ 최적규모의 추구 : 최적규모 보다 적은 경우 평균비용 감소를 위해 더 많은 주민을 유입시키려 하고, 최적규모보다 큰 경우 주민을 감소시키려 하며, 최적규모인 경우 현행 인구를 유지하려 함(최적규모란 최저평균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
결론	① 지방정부가 독자적 조세징수와 지방공공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분권시 효율적 자원배분(Pareto 효율) 달성. ②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며, 시장처럼 주민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큰 이득을 얻는 프로그램을 찾아 지방정부를 선택하게 하면 비슷한 선호와 소득을 가진 주민이 모여 살게 되고 지방공공재 규모가 적정수준이 됨. * Hirshman은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를 탈퇴(exit), 항의(voice:주장), 충성(loyalty)을 제시했는데, 티부모형은 '탈퇴'와 상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장(voice)의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계	① 형평성 저해 가능 : '지역 내 동질성'은 높아지지만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해져 '지역 간 이질성'은 더욱 심해짐(효율성을 위해 형평성을 희생함). ② 전제조건외의 비현실성 : 현실의 직장·문화시설·지역에 대한 감정적 정서·지가·입지조건 및 관련 이주비용, 불완전정보, 외부효과 등을 무시(지역 간에는 현실적으로 명백히 외부불경제나 외부불경제 효과가 존재하며, 집을 팔지 않고 강남으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완전한 이동이 못되어 강남지역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지역과 이득을 보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게 됨. 즉,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옹익주의를 저해).

0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해설

- ①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시기·요건	대상기관	주 체	공개원칙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 전반	매년 1회 정기적(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 (광역 14일, 기초 9일 범위)	상임위원회 소관 전체기관	본회의,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공개(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행정사무조사	특정 사항 (구체적, 한정적)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로 발의, 본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시기 제한 없음	특정사안 관련기관		

- ② (×) 재의 요구는 월령 위반 or 법령 위반 or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재의결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 동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 동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 부단체장 임명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나 동의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결처를 마쳐야 한다.

답 ③

08 지방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③ 9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9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해설

① (×)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 6급 이하의 시보임용기간은 6개월

④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

•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답 ②

09 지방자치법 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
- ㉡ 인구 4만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지역의 인구가 4만이며, 총인구가 10만인 군

①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은 가능

㉡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어야 한다.

㉢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총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답 ①

10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1949년 8월 15일에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1956년에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 ③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 ④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해설

- ① (×) 1952년 1차 지방선거 : 전시 일부지역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 실시(1대), 지방의회 최초 구성, 자치단체장 선거 없음.
- ② (○) 1956년 2차 지방선거 : 1대 자치단체장 선출(시·읍·면장 직선) 및 2대 지방의원 선출, 서울특별시·도지사 선거 없음(대통령이 임명).
- ③ (×) 1991년 4차 지방선거 : 4대 지방의원 선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해야 했지만 일부러 실시하지 않음.

■ 지방선거 연혁

시기	1공화국		2공화국	6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선거	1차(1952)	2차(1956)	3차(1960)	4차(1991)	5차(1995)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차(1998)~11차(2018) 2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1대 지방의원 직선	2대 지방의원 직선	3대 지방의원 직선	4대 지방의원 직선	5대 지방의원 직선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직선 4년마다 실시
지방자치 단체장	서울시장·도지사는 대통령 임명,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간선	직선(시·읍·면장)	직선(서울특별시·도지사·시·읍·면장)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직선(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의회 변천

구분	갑오개혁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1949년	1952년 1차 지방선거	1961년	1991년 4차 지방선거
광역의회		도회	해산	지방자치법에 규정	최초 구성	해산	부활
기초의회	향회	부회·읍회					

④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화

구분	1949	1961	1963	1988	1995	2006	2012
광역	특별시, 도		직할시		직할시 →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시, 읍·면	군(읍·면 자치제 폐지)		자치구			

답 ②

1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 ③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설

- ① (○) 지방재정조정 목적 : 불균형의 조정
 - ㉠ 수직적 불균형의 조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 조정.
 - ㉡ 수평적 불균형의 조정 :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 조정.
- ② (×)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③ (○)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정률보조로서 지방비 부담을 비례적으로 요구(대응지원금)한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되고 그 증가율이 지방재정의 신장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고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심화되고 있다.

답 ②

1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 ②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소득세, 재산세
- ③ 충청남도 공주시 -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해설

- ① (○)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 ②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 ④ (×)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나 자치구세이므로 울주군이 부과할 수 없다.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하므로 울주군 지역의 등록면허세는 울산광역시가 부과한다.

답 ④

※ 과세주제별 지방세의 종류(11개 세목)

과세주제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시세·광역시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주1)}	지방소비세 ^{주2)}	지방교육세
	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자치단체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주3)}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 주1)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을 자치구세로 함. 주민세 균등분만 광역시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	울산광역시세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북구세(자치구세)

• 주2)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함

• 주3) 특별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특별시세로 함. 특별시의 자치구 재산세 중 주택·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특별시와 자치구의 공동과세로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50%씩 배분하되,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교부기준·방법에 의해 자치구에 교부(교부기준 미정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며 교부된 재산세는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균등배분하도록 규정.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한다. (예 등록면허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울산광역시세(도세 항목)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울주군세(시·군세 항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 제주특별자치도세와 세종특별자치시세에는 전체 지방세가 포함됨.

1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해설

- ① (○) 지방자치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 동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③ (×) 동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 출제자가 지문을 잘못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조정결정을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 그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 결정 → 조정 결정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성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직무이행명령·대집행 가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지방자치단체 장 상호 간 분쟁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 결정	① 당사자의 신청시 ②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 필요시	행안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정 결정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도록 해야 하나 의결 내용과 다른 조정결정을 해도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절차는 없음.
행안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정결정 통보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함.		
조정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 안 되면 행안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이 직무이행명령·대집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실질적 구속력은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조정 결정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없어서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의 조정결정은 법적 구속력과 실질적 구속력 모두 있음 : 조정결정 사항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대집행 가능

○ 정답 여부 : 엄밀히 법률 조문에 따르지만 ④도 정확히 옳은 내용은 아니지만 ③이 확실히 틀리므로 ③을 답으로 본다.

답 ③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① (○) 지방투표법 제7조 1항
② (○) • 주민투표 실시 사례

- ㉠ 주민투표법 제정 이전에도 주민투표는 시행된 바 있음(1996년 광주 북구청 동 통합, 1998년 여주시·여천시·여천군 통합)
㉡ 주민투표법 시행 후 2020년 2월 현재 총 11건 실시.
㉢ 2005년 7월 제주도 행정구역 구조개편(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을 위한 주민투표(개편안 채택)
9월 청주시·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청원군 반대[53.5%]로 통합안 무산)
11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찬반 주민투표(군산/포항/영덕/경주 모두 찬성. 이후 경주시 선정)
㉣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법위(투표권자 1/3 미만 투표로 미개표)
12월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평은리 선정)
㉤ 2012년 6월 청주·청원 통합(통합 찬성 확인)
10월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유치 반대)
㉥ 2013년 6월 완주·전주 통합(완주군에서만 실시. 통합 반대)
㉦ 2019년 2월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금 분배방식 결정(미타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분배하는 안에 찬성)
10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입지 원안[거창읍] 찬성)
㉧ 2020년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군위군·의성군(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로 정하여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결정됨)

③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④ (×)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답 ④

1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다.
- ② 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 ③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 ④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된다.

해설

- ①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가 있다. 종래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경영위탁방식인 공동출자·출연법인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②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이다.

■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부대사업 포함](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 | | |
|---|---|
| ㉠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 ㉡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
| ㉢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평방미터(m^2) 이상 |
|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 이상 |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 평방미터(m^2) 이상 |
|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 ㉧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지시설 포함)·토지 또는 공용·공공 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 도로관리연장 50km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 |

④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 법인이 아니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이다.

■ 지방기업의 유형 : 지방기업법 상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경영위탁 방식인 공동출자·출연법인은 지방기업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개별 법률로 규율)

운영방식	유형	설립	기관성격	관리책임	근거 법률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도시개발 등) • 수익성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공급 가능	정부조직(구성원은 공무원). 법인격 없음	관리자(공무원)	지방기업법
간접경영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민간 출자 불허 • 지방정부의 특정 사무 대행(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만 처리)	법인(구성원은 공무원 아님)	이사장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또는 민간(외국인·외국법인 포함)과 공동 출자 가능(민간은 50% 미만 출자 가능) • 독립사업 경영 + 지방정부의 특정 사무 대행		사장	
경영위탁	공동출자·출연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민간과 공동 출자·출연(출연은 자치단체가 10%이상일 것) • 독립사업 경영	법인(주식회사나 재단법인)	기관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답 ③

16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 동법 제153조(행정협의회의 조직)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 ■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와 연합체



• 동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동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답 ③

17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6인이다.
- ②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2002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다.
- ④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해설

① (×) • 자치구·시·군의회 최소 의원 정수 : 7인

• 광역시·도의회 최소 의원 정수 : 19명(이 중 비례대표 시·도의원 최소 정수는 3인)

② (○)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 1991년 지방선거 부활 때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금지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모두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추천 및 정당표방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구분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중선거구(2~4인)	소선거구	·	·	소선거구
정당공천	허용	허용	허용	배제	배제
비례대표제	도입	도입	·	·	미도입

- ④ (×) • 지방선거 선거권자 :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해당자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거주자)나 제2호(거주불명자) 해당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재외국민) 해당자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답 ②

18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하였다.
 ② 2018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③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20%를 세원으로 한다.
 ④ 시·도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해설

- ① (○) 지방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을 세원으로 2010년도에 신설.
 ② (○) 지방세 세수 총액 중 비율로 보면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순이다.
 • 2018년 지방세 세수 비중 : 취득세(28.24%) > 지방소득세(19.81%) > 재산세(13.68%) > 자동차세(9.35%) > 지방소비세(8.85%) ...
 ③ (×)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세이다.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부가가치세 총액)
 ○ 세 액 :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총액) × 21%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2020.1.1.부터 지방세의 세원을 국세의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로 변경하였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지만,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하도록 특례를 두었다.

- ④ (○) 각 지역 간 지방소비세액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답 ③

19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이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③ (○)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④ (○)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답 ②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② 주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③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④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해설

■ 지방자치법 제9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각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①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②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③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④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⑤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⑥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⑦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⑧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⑨ 공유재산관리 ⑩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⑪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⑤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⑥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⑧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① 소류지(小溜池)·보(陂) 등 농업용수시설 설치·관리 ②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유통지원 ③ 농업자재의 관리 ④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⑤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⑥ 농가 부업의 장려 ⑦ 공유티 관리 ⑧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⑨ 가족전염병 예방 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⑪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⑫ 중소기업의 육성 ⑬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지원 ⑭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인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① 지역개발사업 ②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⑤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⑥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⑨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	⑫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⑬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⑭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⑮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①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②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①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② 화재예방과 소방		

답 ④